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

수신자 이양재 귀하 (우 5509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5)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질의 [] 종결 등) 통지서

접수번호 11800125	접수일 2024. 01. 24.
---------------	-------------------

청구 내용	<p>청구인 이양재</p> <p>피청구인 ,,총장 양오봉</p> <p>청구취지 ‘을제10호증 사본을 공개하라’는 재결을</p> <p>청구원인</p> <p>청구인은,, ‘을제10호증 사본(2020가단31564)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23.12.30.)를,,</p> <p>피청구인은 ‘청구하신 정보는 전북대학교 국제처 > 언어교육부 외국어학당 홈페이지 정보소재,,’고 한 것은 기안자 행정주사 정상우와 전결자 국제처장 조화림은 매사를 속이려 드는,,</p> <p>안내는 안내일 뿐 공개가,, ‘대신 한다’는 건방을 떠는 물론,,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였다한들 어느 부분이 ‘을 제10호증’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은,,</p> <p>‘을 제10호증이 생산된 연유</p> <p>가.,, 피청구인의 허위주장이 너무 심해,, 원고가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증명할 사실’에는</p> <p>피고는 을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소위 ‘비율제 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북대학교 측은 급작스럽게 원고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2020년 재계약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내부적으로 수강생 등의 반발이 일어</p>
-------	---

나자 2019.12.17.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측에서 작성하라고 하여 을 제2호증을 작성한 것일 뿐, 실제 비율제 강사에 해당하여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을 제1호증은 2017.7.20. 제정된 것인데, 원고는 1997년부터 근무한 자이며, 위의 '외국어학당 내국인강사 운영지침'제 5조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9.12.17. 전에는 위의 제정된 내국인강사 운영지침상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북대학교 측에서 원고와 작성한 다른 근로계약서 내지 위탁계약서의 존재, 2017.7.20.을 제1호증이 규정되기 이전 언어교육부 내국인강사 관련 인사규정이나 내부지침 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피청구인의 소송수행자 변호사 윤희상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문서제출명령 대상문서 중 제출가능한 문서인 시간강사위촉에 관한규정을 서증(을 제10호증)으로 정리하여 임의 제출하고자,,',라고, 당일 같은 변호사가 '접수증명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을 제10호증'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러한 문건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을 핵심담당자 행정주사 정상우와 총책임자 국제처장 조하림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소리를,,

정상우와 조하림의 허위주장이 계속되고 있었기에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제출 모든 민원은 언어교육원에 배정하지 말고, 총장실 팀장 방명환에게 배정하라. 여차하면 제출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한 1심 판사 박준범, 허위가 점철된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피고대리인들과 언어교육원 관계자들, 아직도 월급만 챙기고 있는 총장 양오봉, 국가기관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제보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송을 일삼고 있는 교육부장관 등을 고발할 가능성은 100%'라고 하였던 날(모두 4건임)이 지난 10일임에도 1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총장 양오봉 한심한 놈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네 놈 졸자들 때문에 위에서 거명된 자들을 고발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터인데,, 청구인이 실제로 고발할지 여부가 의문스럽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해야 하고 나는 그리 해왔다.



	<p>결론</p> <p>청구취지대로 재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p>
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p>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p> <p>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입니다.</p> <p>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청구번호 11800125 (2024.1.24.)호는 서울장학재단에서 생산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
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협조자

시행

우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 서울장학재단

전화번호 02-8667-3512

팩스번호 02-4133-2258 / dk248@hissf.or.kr

/ 공개 구분

유의사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의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